





## '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'이란?

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

**시행시기** 2024년 4월 1일



**지원대상**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


**지원금액**

- **지원횟수** 부부당 최대 2회
- **지원금** 1회당 최대 100만원



**지원항목** 냉동난자 해동, 정자채취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, 시술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 등



**지원신청**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



##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

### 0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

**기간** '24.4.1. 이후 연중

**방법**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

### 02 지원 신청 절차 등

사전 신청 없이,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

\* 단,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,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 신청할 것

### 0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

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

**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**

\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



### 04 지원 신청/시술비 청구 및 지급

**기간**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

**방법**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(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)

\*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



## 구비서류

구분	제출서류
신청	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) 1부 <서식 1> ② 주민등록등본 1부 /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<small>* ②~③의 경우 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</small> ④ 생식세포(난자) 동결·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
	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-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<서식 6> -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<small>*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</small> -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(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
청구	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



## 서류 제출 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,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